#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재난안전관리본부), 02-970-9225

제정 2021. 6. 17.

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,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①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도로교통법 제19호나목의 원동기 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  - 1. "공유 개인형 이동장치"란 사업자와 이용자 간 청약과 승낙 등의 방법으로 임차 (이용) 계약을 체결하고, 계약에 근거하여 사용권을 얻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.
  - ② 도로란 「도로교통법」에 정의된 도로와 동일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시설물을 말하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 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 4 조(관리원칙) ① 안전관리의 주관부서는 재난안전관리본부로 한다.
  - ② 주차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교통관리 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시행부서에서 관리한다.
  - ③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1. 학생은 학생처, 교원은 교무처, 직원은 사무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.
  - 2. 안전교육은 동규정 제20조에 따른다.

- ④ 공용 충전시설 설치 및 시설물 유지는 시설과에서 관리한다.
- ⑤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를 하여야 할 경우 학생회의 요구를 받아 학생처는 "공유 개인형 이동장치"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맺을 수 있다.
- 1. "공유 개인형 이동장치" 사업자는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교통관리 규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2. "공유 개인형 이동장치" 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수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## 제2장 운행

- 제5조(통행의 금지 및 제한) 총장은 대학 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보행자 등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(區間)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- 제6조(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) ①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은 「도로교통법」제13 조의2(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)를 준용한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고 이동하여야 한다.
  -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. 이때 도로의 통행은 도로의 우측끝을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한다.
  - 1.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
  - 2. 자전거 전용도로의 파손, 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
  - 3. 자전거 전용도로의 폭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
  - 4.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
  -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.
- 제7조(속도 제한 등)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는 20km/h 이하로 한다.
- 제8조(안전거리 확보 등)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, 개인형 이동장치, 자전거 등(이하 "차량 등" 이라고 한다)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

- 그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,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그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 등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**제9조(보행자의 보호)**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학 내 도로 운행 시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운전하 여야 하며 보행자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.
  -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.
  -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#### 제3장 충전 및 주차

- 제10조(충전의 장소 및 방법) ①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충전이 가능하다.
  -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(KC 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착 의무)에 한하여 제조사별 충전방법에 따른다.
  - ③ 대학은 고시된 충전단가에 따른 이용료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.
  - ④ 화재 및 전기 안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1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 이외의 학내에서는 충전할 수 없다.
- 제11조(주차의 금지)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「도로교통법」제32조 및 제33조에서 지정하는 장소 준용
  - 2.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 또는 장애인의 접근이나 주차를 방해할 수 있는 곳
  - 3. 건물 입구 또는 건물에서 나가는 곳
  - 4. 건축물, 구조물, 녹지공간 위
  - 5. 도로, 보도, 테라스, 주차장, 자전거 전용도로 등 지정구역 이외의 장소

- 6. 경사로, 계단 또는 연석 등
- 7. 본교 버스정류장
- 8. 총장이 교내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
- 제12조(주차위반에 대한 조치) 학교 관리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## 제4장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

- 제13조(무면허운전 등의 금지) 누구든지 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에 따라 시·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**제14조(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)**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.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.
- 제15조(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)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제1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, 질병 또는 약물(마약,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6조(난폭운전 금지)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난폭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7조(안전운전 의무)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,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, 도로의 교통상황과 장치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8조(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)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1. 캠퍼스 내 횡단보도, 교통표지판, 교통 방향 탑승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할 것
  - 2. 포트홀, 움푹 패인 곳, 장애물, 공사장, 보행자, 기타 차량 운행 상태 등 주변 환경에 유의하여 운행할 것
  - 3.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둔 채 시비·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의

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

- 4.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
- 5.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
  - 가. 개인형 이동장치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
  - 나.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
- 6.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가. 정지하고 있는 경우
  - 나.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
- 7.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 헤드폰 또는 이와 유사한 귀마개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- 8.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
- 9.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, 손목보호대, 무릎보호대, 팔꿈치 보호대 등 기타 보호장비도 고려할 것
- 10. 양손은 항상 핸들바에 올려놓고 절대 한손으로 운전하지 말 것
- 11. 운행 시 복장은 눈에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되도록 야간에는 운행하지 않을 것. 부득이하게 야간에 운행할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전조등, 후미등을 갖추고 각 면에 반사재료나 반사조명을 부착할 것
- 12. 그 밖에 총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·공고한 사항을 따를 것
- ② 대학관리자는 제 1항 각 호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 관리자가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제19조(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)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 그 주변을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.
- 제20조 (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) ① 대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- 제21조(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) ① 대학 내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와 목격자 등은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관련자, 목격자 등은 사고발생 장소, 사상자의 수 및 부상정도, 재산 피해사항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대학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③ 대학관리자는 안전사고 접수 시 사고관련자 또는 신고자에게 사고 현장을 원형대로 보존토록 하고 안전사고 보고서 및 안전사고 진술서 등을 작성·징구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22조(안전사고의 조사) ① 대학관리자는 총장에게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.
  - ② 현장 조사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.
  - 1. 사고발생일시
  - 2. 사고발생장소
  - 3. 피해상황(사망자수, 부상자수, 재산피해규모)
  - 4. 사고신고사유
  - 5. 사고발생경위
  - 6. 신고자(소속, 성명, 연락처)
  - 7. 사고당사자(소속, 성명, 연락처)
- 제23조(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) 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본교 시설물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 하여야 한다.
  - ② 본교는 본교의 귀책사유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한다. 다만, 본교의 분명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는 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본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제24조(안전사고에 대한 면책)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  - 1. 지진, 태풍,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
  - 2. 학생시위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
  - 3.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
  - 4. 주차구역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발생되는 피해
  - 5. 지정된 충전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충전하여 발생한 피해
  - 6.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되는 피해

## 제6장 보칙

제25조(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협의회 구성 및 운영) ① 대학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안전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대학관계자로 구성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협의회의 구성・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 <2021. 6. 1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.6.17.부터 시행한다.